

창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3341 판결 [공사대금 청구독촉 사건]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334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가소11833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종환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3. 10.

판결 선고 2022. 4. 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가소1183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8호증[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당심 증인 C은 피고가 위임장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는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날인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2020. 3. C에게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을 요청하자, C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변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강박하여 위임장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강박에 의하여 위임장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축법령1)에 따르더라도 건축관계자(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아래 내용과 같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갑 제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E 지상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9. 10. 10. 창원시 성산구 E, F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및 준공, 행정적인 업무, 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모든 업무를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C으로부터 피고 등의 소유였던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0. 16.부터 2019. 10. 31.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④ 원고가 도급받은 철거 등의 공사대금은 합계 12,3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2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1)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